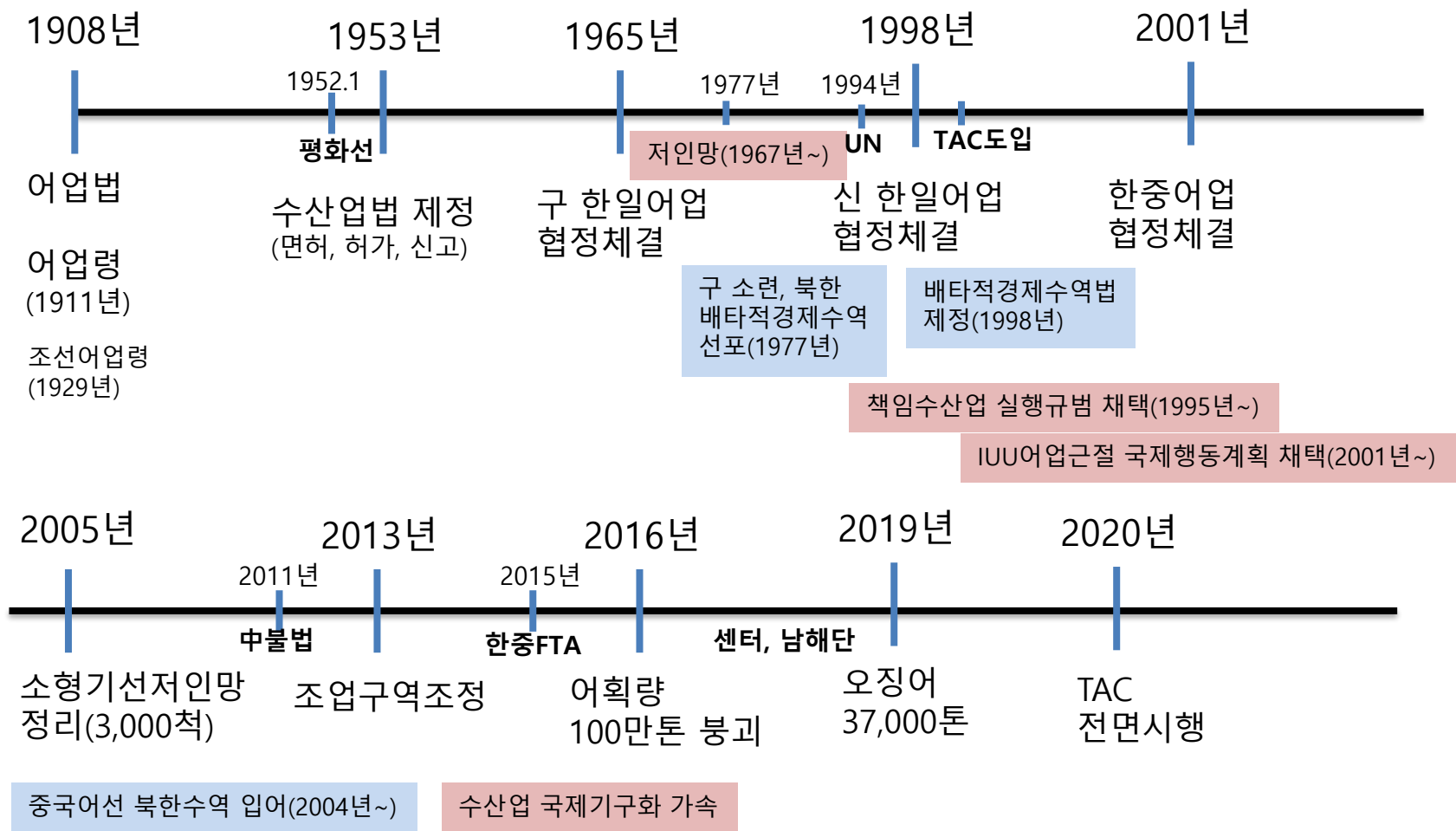


#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IUU어업의 이해와 국내외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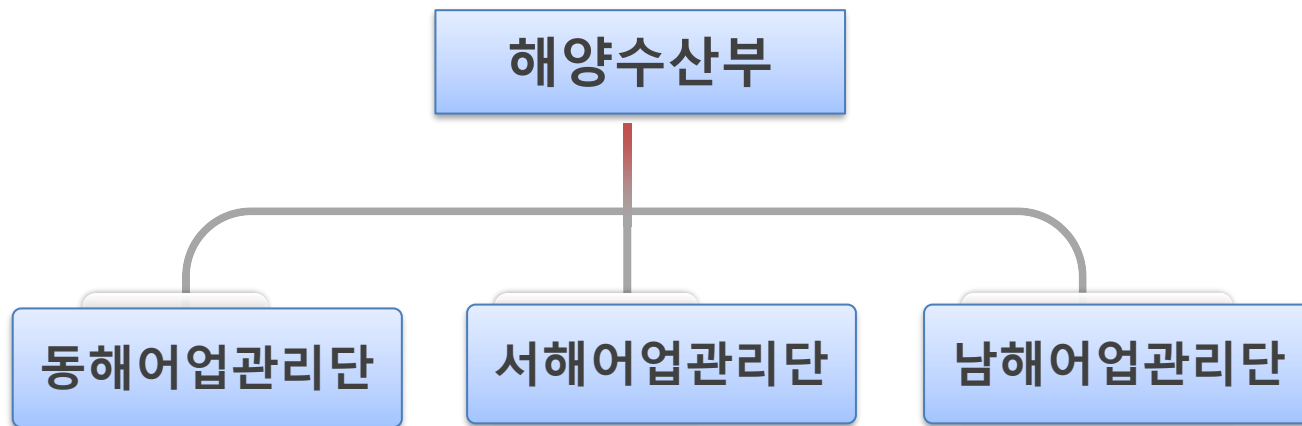


안전한 바다, 풍요로운 바다, 행복한 어업인 어업관리단이 함께 합니다.

# 1. 우리나라 어업의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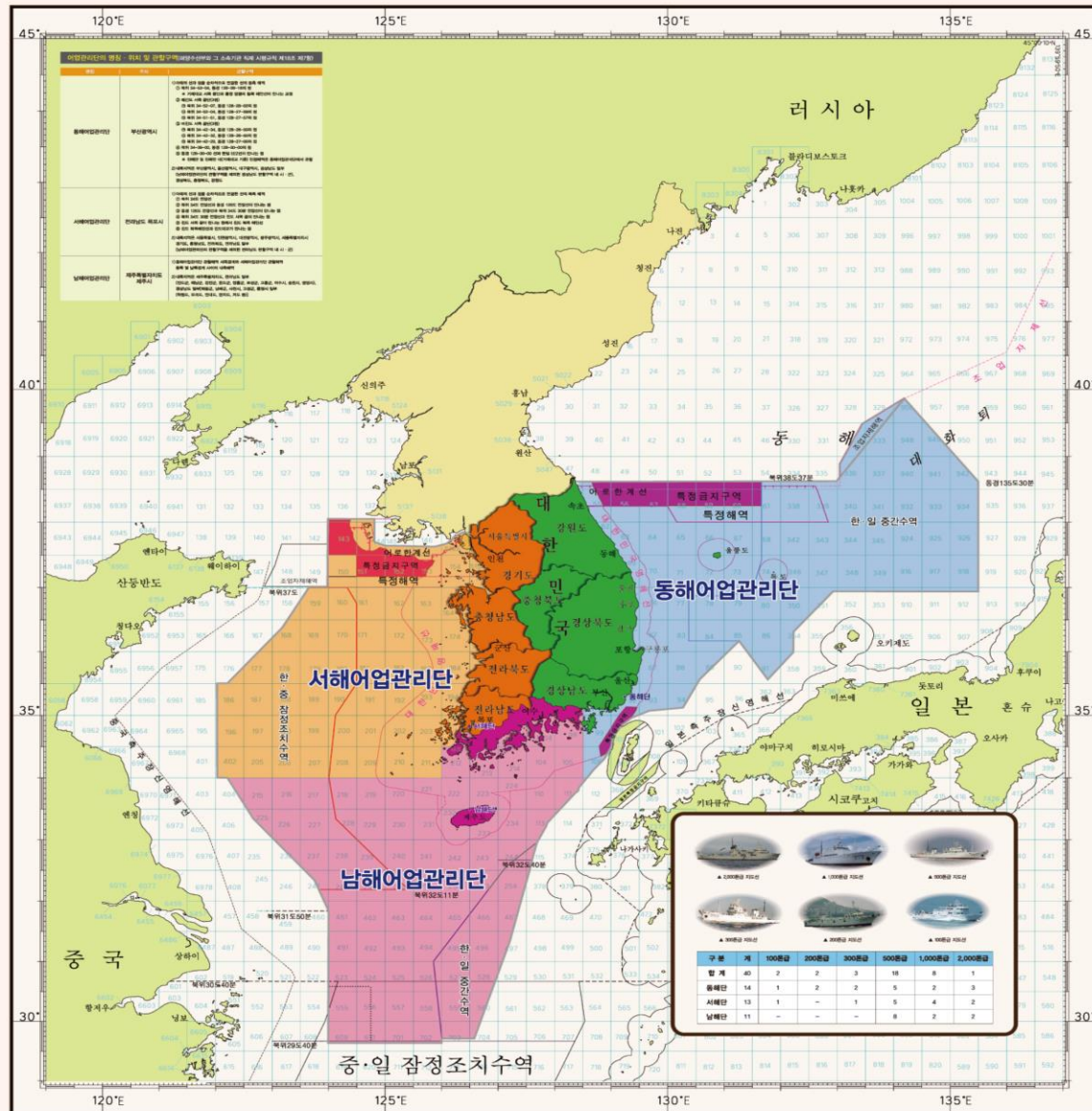


## 2. 어업관리단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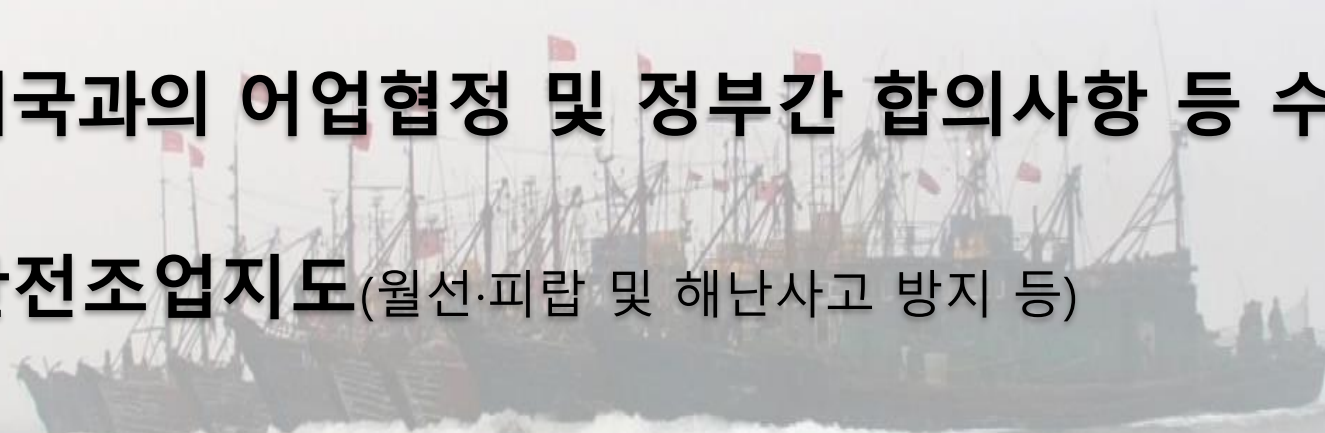


	계	동해단	서해단	남해단
국가지도선	40척	15척	13척	12척
관할구역	433km <sup>2</sup>	172km <sup>2</sup>	136km <sup>2</sup>	125km <sup>2</sup>
어업감독공무원	857명			

# 2-1. 어업관리단 관할수역도



### 3. 어업관리단 주요 기능

- ◆ 연근해어선 어업관리 (IUU예방, 질서유지, 자원관리 등)
  - ◆ 원양어선 IUU 어업 방지 (조업감시센터(FMC) 운영)
  - ◆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등 수행
  - ◆ 안전조업지도 (월선·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등)
  - ◆ 어업분쟁 등 어업 조정
  - ◆ 어업인 교육 지도
- 
- A large fishing vessel, likely a Korean longliner, is shown at sea. The ship is dark-colored with multiple masts and rigging. The background is a hazy, overcast sky and sea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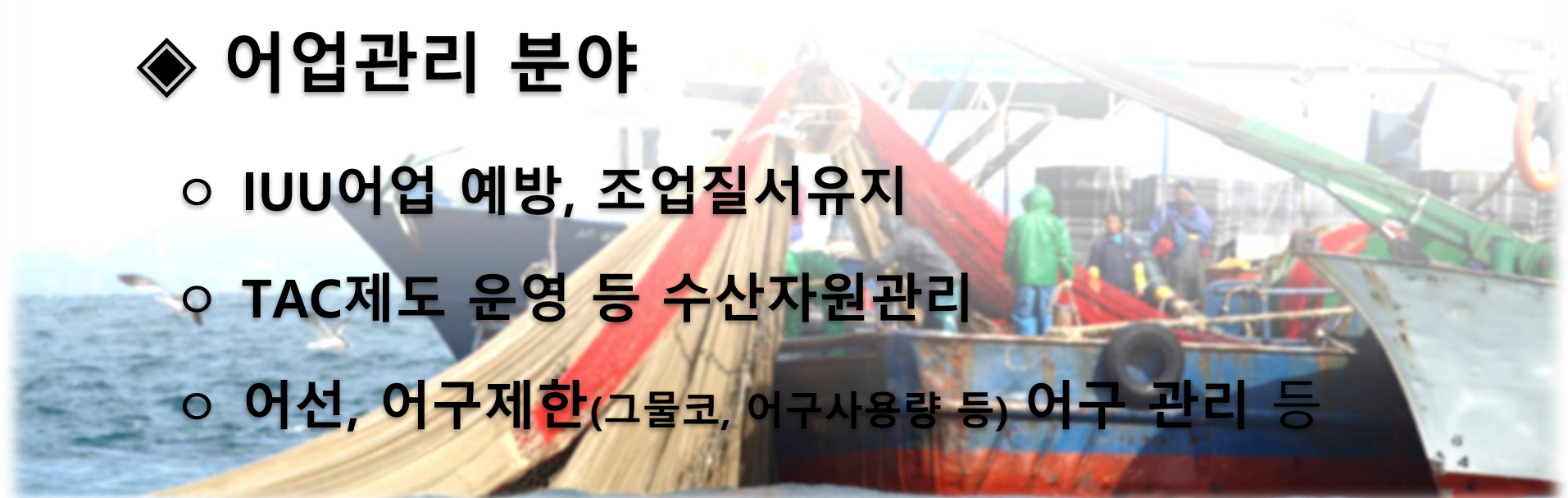
## 3-1. 연근해어선 어업관리

### ◆ 대상어선 : 40,462척

- 근해어업(21개) : 2,677척
- 연안어업 (8개) : 33,487척
- 구획어업(12개) : 4,298척

### ◆ 어업관리 분야

- IUU어업 예방, 조업질서유지
- TAC제도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
- 어선, 어구제한(그물코, 어구사용량 등) 어구 관리 등



## 3-2. 원양어선 IUU어업 방지

[ '14.03.11. 조업감시센터 신설]

### ◆ IUU어업 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 및 불법어업 경보 발령

\* IUU(Illegal, Unreported, Unregulated) : 불법, 비보고, 비규제

### ◆ 원양어선 조업활동 통제·관리로 불법어획물 시장유통 차단

### ◆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

### ◆ 원양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IUU 위험성 분석 관리

### ◆ IUU어업 예방 교육 및 간담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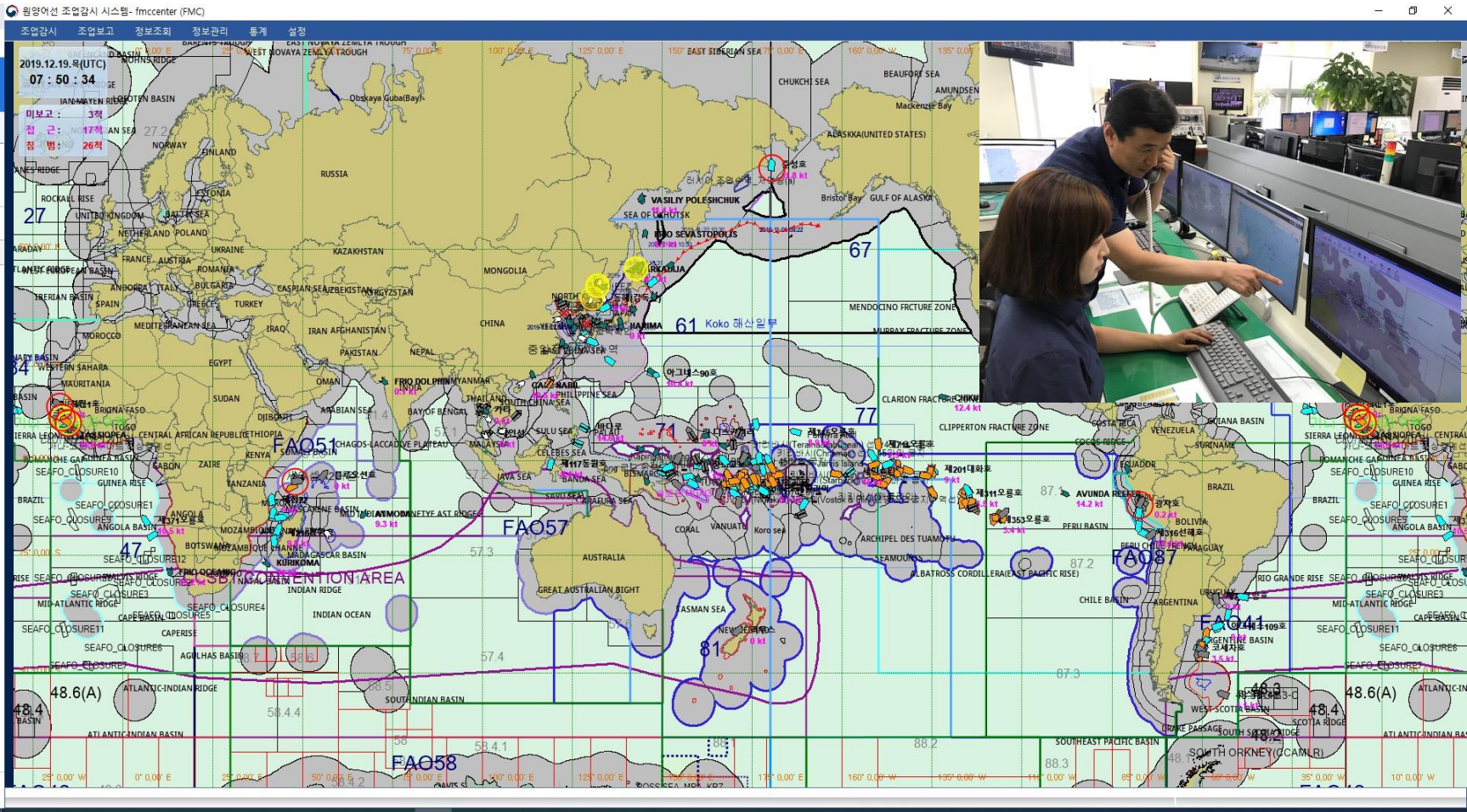
### ◆ IUU어업 근절을 위한 MCS 강화 및 국제사회 공조·협력

\* MCS(Monitoring, Control, Surveillance) : 감시·통제·감독

# 원양어선 전자조업보고 개념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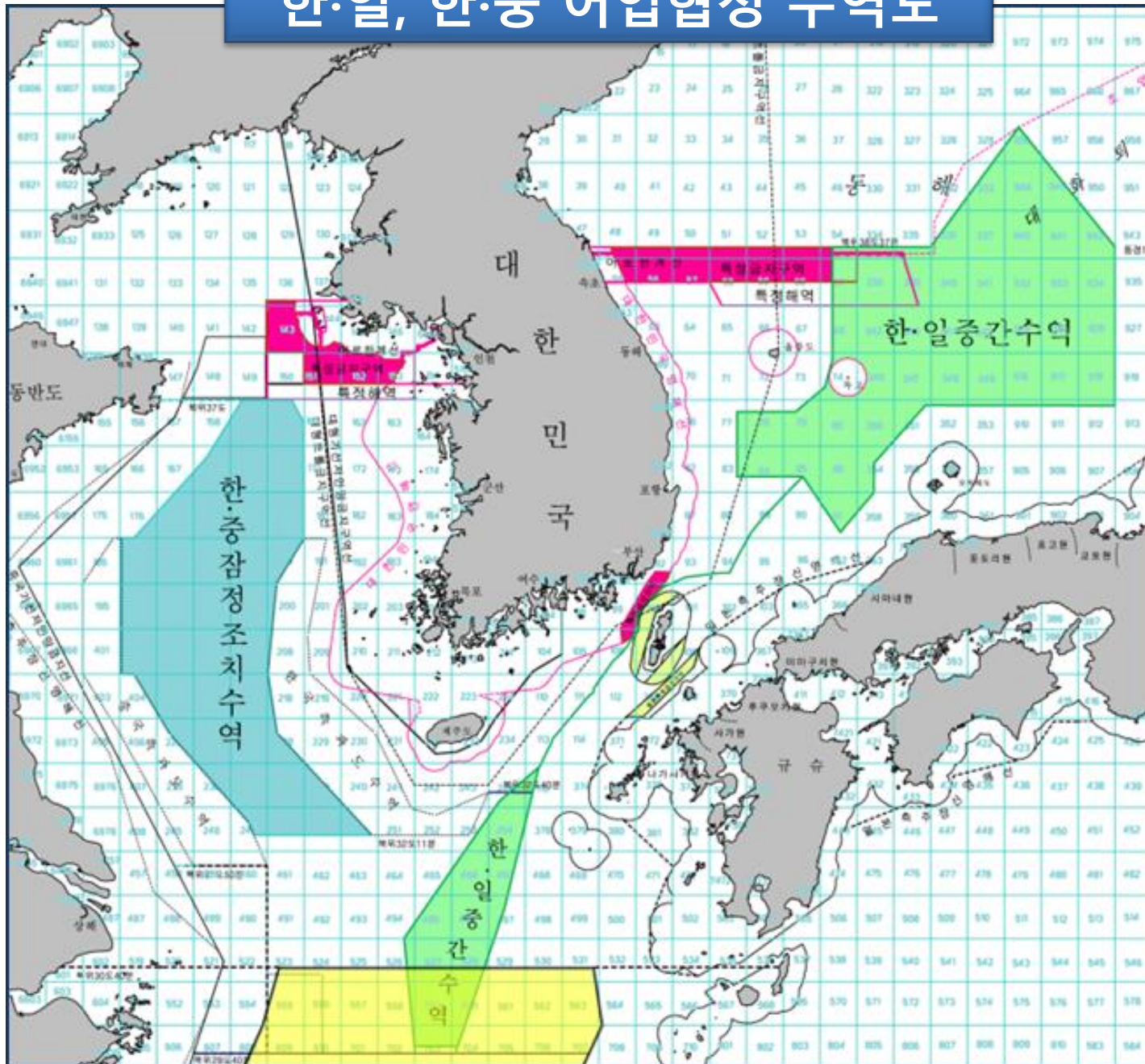
# 원양어선 조업감시 시스템



**IUU어업 방지를 위한 실시간 감시 및 불법어업 경보 발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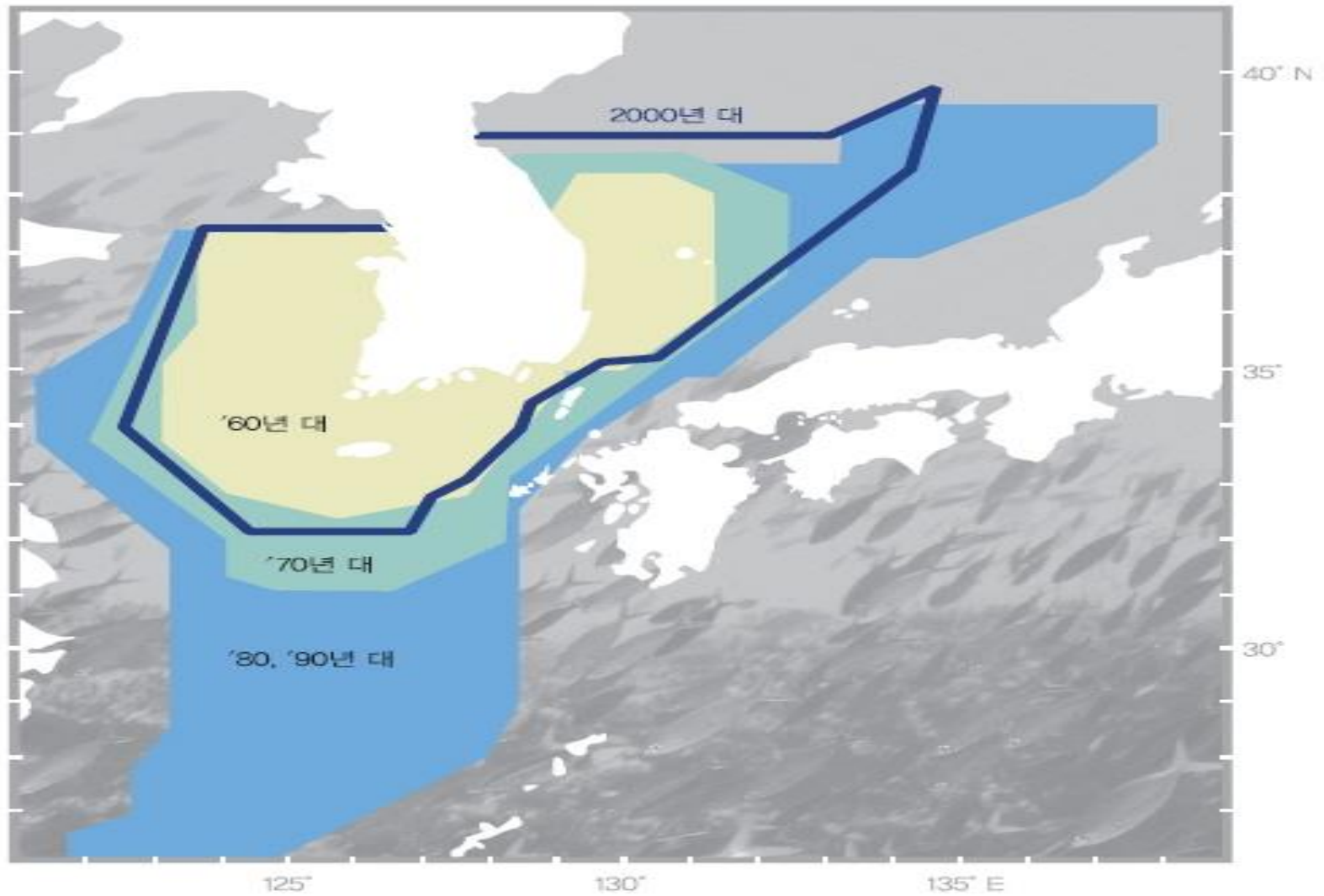
\* IUU(Illegal, Unreported, Unregulated) : 불법, 비보고, 비규제

# 한·일, 한·중 어업협정 수역도



## 연대별 어장 변화

'80, '90년대 어로기술의 발달로 남중국해까지 어장 확대  
2000년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(EEZ) 선포로 어장 축소



# 바다의 구조

육지

마을어장

협동양식

정치망

정치성구획

연안어업

영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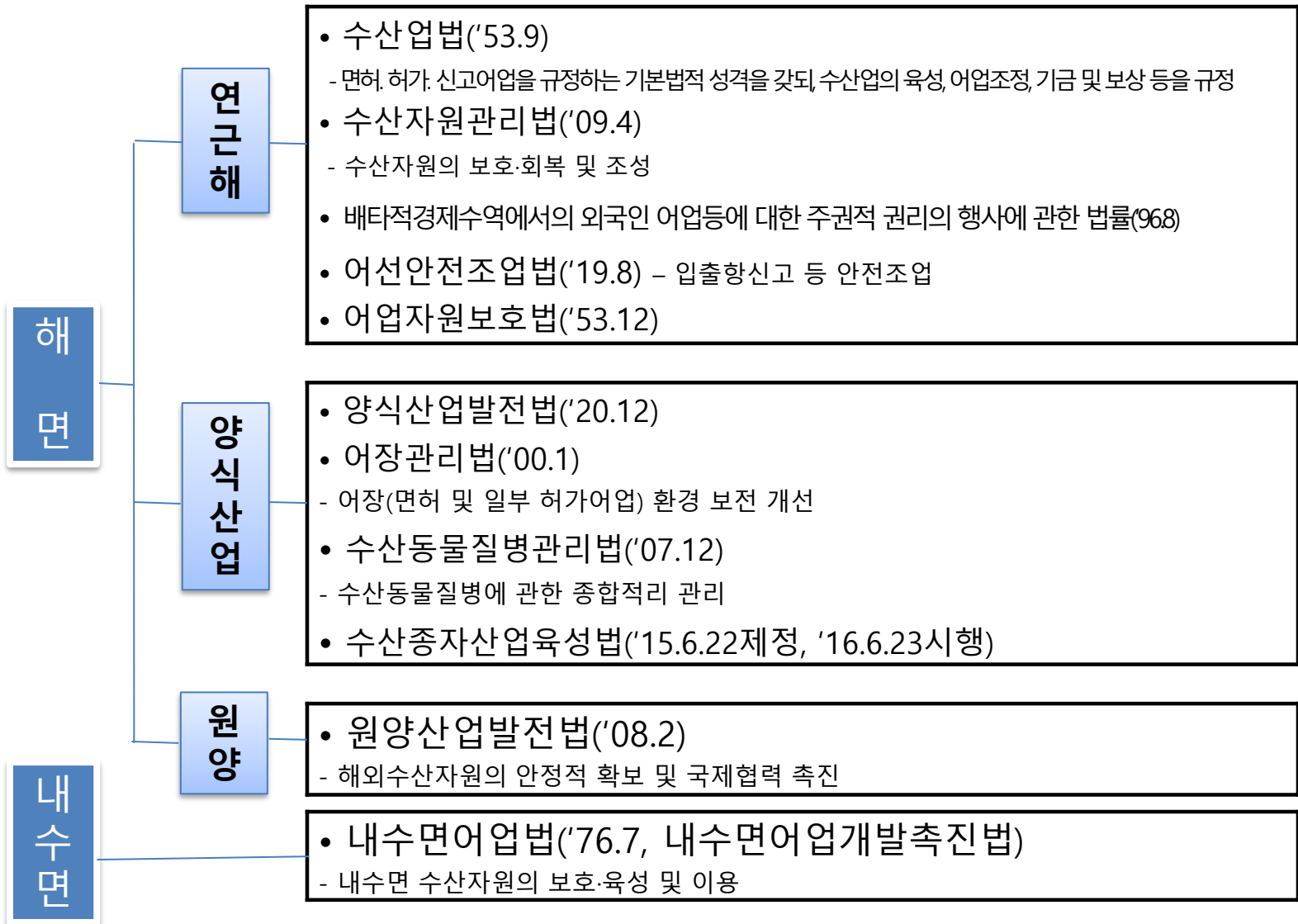
근해어업

EEZ

원양어업

공해

# 3-4. 관계 법률



유  
어

안  
전

기  
반  
구  
축

- 낚시관리 및 육성법('11.3)  
- 어업인 소득 증대(낚시어선 승객 안전 및 낚시어선업 발전)

- 농. 수산물품질관리법('01.1)  
-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공산업 육성(양식수산물 안전 일부 포함)

단  
체

- 수산업협동조합법('62.1)
-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('03.9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09.4)

시  
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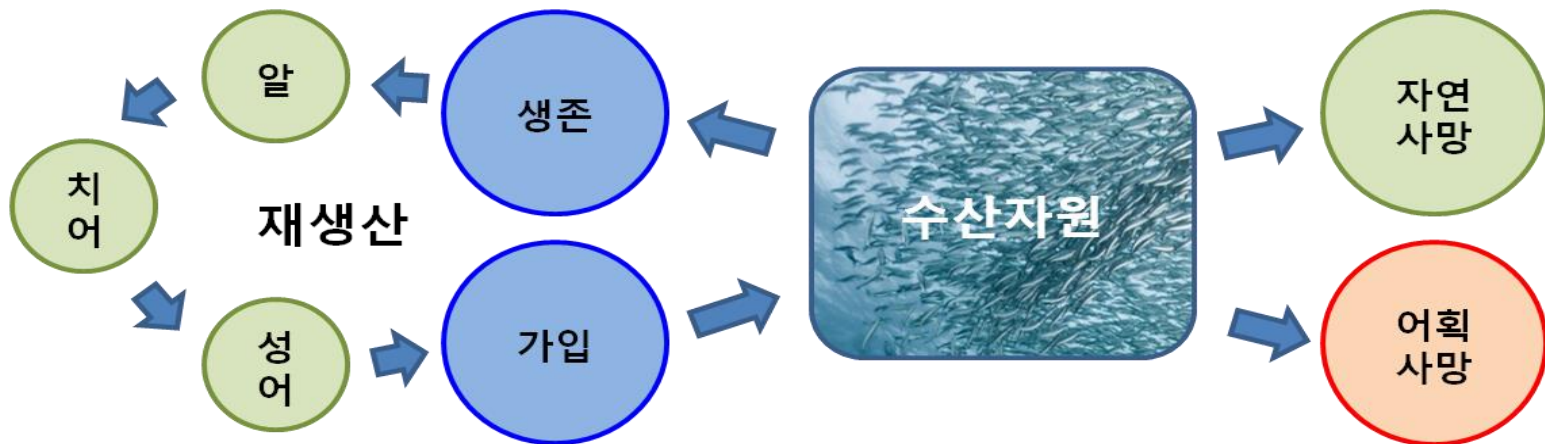
- 어선법('77.12)
- 어촌어항법('05.5), 선박안전법('61.12)

지  
원

- 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('15.6.22제정, '15.12.23시행)
-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5.3.27제정, '16.3.28시행)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043)
-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(08.3)
-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('08.3)
- 농어업재해대책법('90.8)
-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1.7)

# 수산자원의 특징

- 공유자원(경쟁조업에 따른 자원고갈로 최근 관리 및 규제강화)
- 자율갱신성(생태계 내에서 스스로 자원의 질적·양적 조절)
- 이동성(계절, 해류, 수온, 먹이에 따라 이동)
- 변동성(연안오염 등 생태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)



## 그간 수산자원에 대한 인식

### 바다의 자원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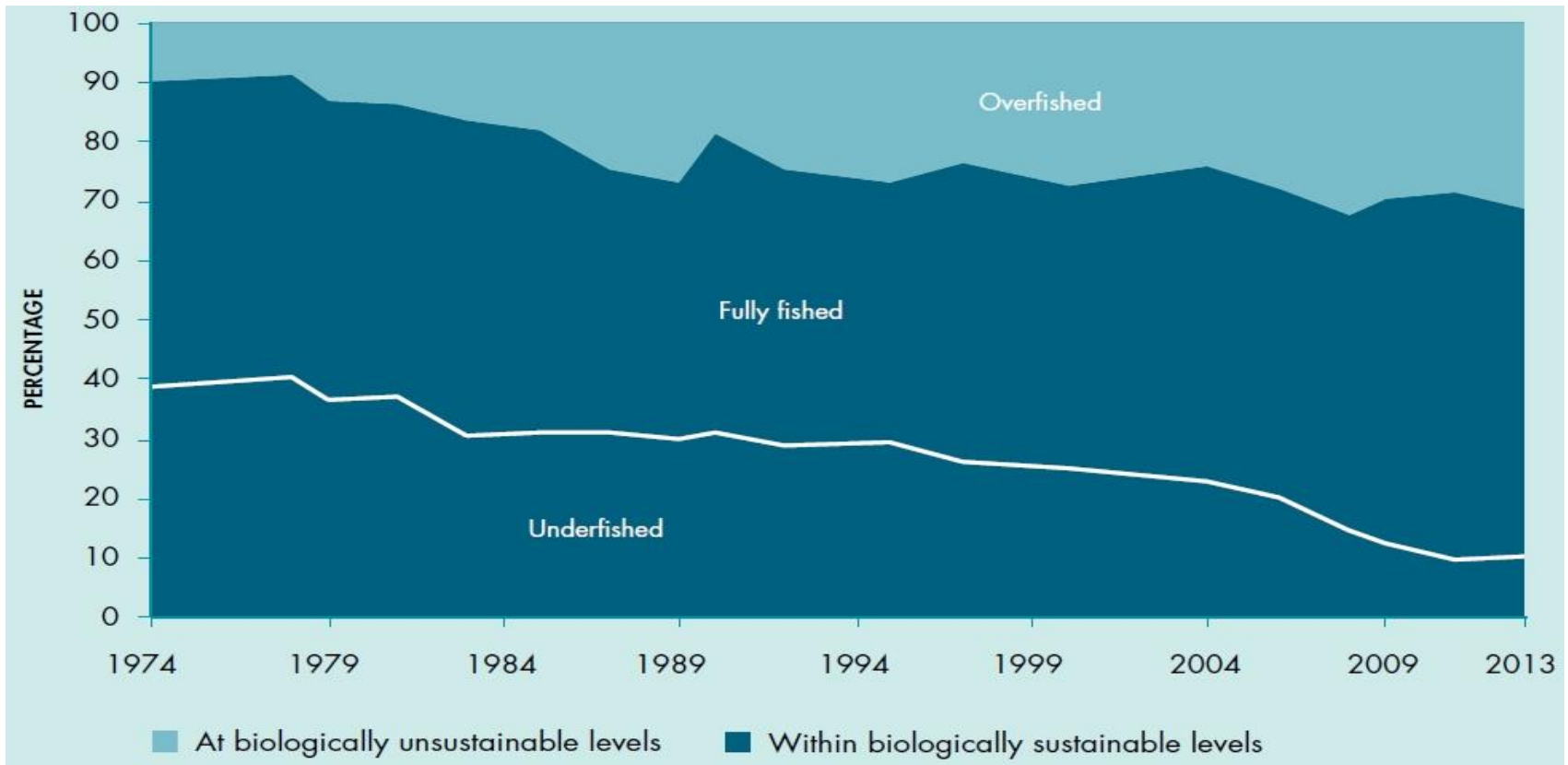
➤ common resource? Tragedy of Commons?

### 광활한 바다의 자원은 고갈될 리가 없다?

- ✓ Hugo Grotius, "Mare Liberum" vs. John Selden, "Mare Clausum" (17C)
- ✓ FAO, 83%가 과잉 또는 완전 이용 중, 일부 어종 급감(예, 참다랑어) (21C)
- ✓ 무규제, 과잉투자, 과도한 어선세력, 편의치적, 부적절 어구, 국가간 협력 부족 등
- ✓ 재생 가능한 자원, 관리된다면 영속적 이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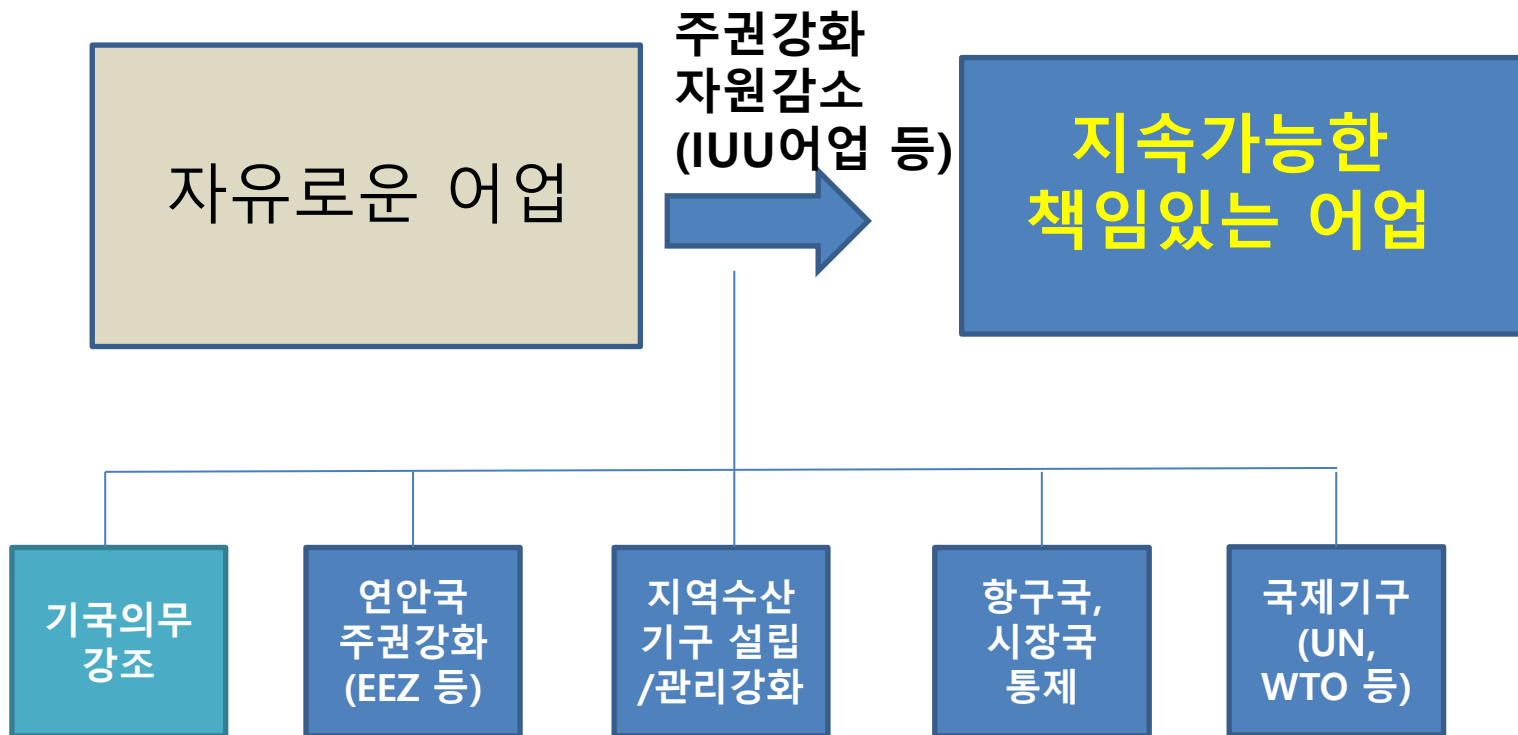
## 수산자원 상태

전세계 수산자원 중 **31.4%**는 남획, **58.1%**는 과도어획,  
**10.5%**는 미개발 상태로 판단 (2013 기준)



#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규제

19C 해양·어업 자유의 원칙 → '70년대부터 200해리 EEZ 선포 → 자국 연안 어장 의존도 심화 → 생물학적, 경제학적 남획 및 21C 식량안보문제 발생



## 4. 국제어업환경 변화

### 책임있는 수산업 실행규범('95.9)

#### ◆ 합리적 자원 이용, 관리원칙

(노력량의 과잉투입 및 과도어획 방지, 자원의 재생산 능력의 지속적 개발)

#### ◆ 의사결정자료 신뢰성의 원칙

(어업자원 보존 관리 정책은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과학정보에 기초하여 결정)

#### ◆ 자원관리형 어법 선택의 원칙

(부수적 어획, 혼획으로 인한 타 어종의 손실 최소화)

## ◆ 연안생태계의 보존의 원칙

(산란장, 체묘장, 습지등 연안생태계의 보존)

## ◆ 전통어업 및 어민생계 보장의 원칙

(전통어업 어장, 자원에 대한 우선적 배려, 생계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)

## ◆ 국가 책임과 국제협력의 원칙

(국제법이 정한 어업자원 보존 관리 규칙이행,  
어선의 조업활동을 관리·통제할 효과적인 운영체제 구축 )

## ◆ 국제법 준수 및 어업분쟁의 평화적 해결

## 4. 국제어업환경 변화

### IUU어업의 규제('01.3.1 채택, FAO 수산위원회)

- **I : 불법어업** (illegal fishing)

국내의 무허가, 범칙어업 국제법규 의무를 위반하여 어업

- **U : 비보고어업** (unreported fishing)

법규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어업

- **U : 비규제어업** (unergulated fishing)

국제법상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불일치 하게 행하여지는 어업

# IUU어업 혐의 어선 규제

- Ⓐ 선적국의 국적 부여 거부권
- Ⓑ 연안국의 입어허가 거부권
- Ⓒ 항만국의 임검권
- Ⓓ 지역수산기구의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 요구권
- Ⓔ 어획한 어획물과 제품의 거래를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불법화 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

각 국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 · 임검 · 통제 실시

## 5. 불법어업의 정의

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불법어업으로 정의

헌법 제120조

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, **수산자원**,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**채취,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**할 수 있다

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국가는 그 균형 있는 **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**을 수립한다

수산자원은 특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1953년 수산업의 기본제도를 규정한 수산업법을 제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,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

# 자원관리 수단

대분류		중분류	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세부수단
자원관리	조사 평가	자원조사	양륙항조사, 시험선조사, 어업실적보고, 자원생태조사
		자원평가	자원관리 대상종 자원평가, 한. 중. 일 관련어종 자원평가
	어업 관리	노력량규제	허가정수, 톤수마력규제, 어선감척, TAE(총허용노력량)
		어획량규제	TAC(총허용어획량), IQ(개별할당량), ITQ(개별양도성할당량)
		기술적규제	어선. 어구제한, 그물코규격제한, 포획금지구역. 수심. 기간, 포획금지 체장. 체중, 암컷포획금지, 어란 및 치어포획금지 등
		구역규제	보호수면, 수산자원관리수면, 수산자원보호구역
		기타규제	유해어법금지, 범칙어획물판매금지, 범칙어획물방류
		감시감독	불법어업단속, 소형기선저인망정리, 조사원감시체계
		자율관리	자율관리공동체 지원
	자원 관리	어장관리	어장환경개선, 해적생물구제, 불법 및 침적어구철거
		어장조성	인공어초, 바다숲조성, 갯닦기, 투석
		종묘방류	건강종묘 방류 및 질병관리
		바다목장	시범 바다목장, 연안 바다목장
	자원 회복	자원회복	자원회복 휴어제, 자원회복 감척, 자원회복 TAC
		생태회복	서식지 및 산란장 회복, MPA(해양보호수역) 설정

## 불법어업의 유형

허가 = 어구 = 어선 = 자원 = 보고 = 안전 = 명령

### 1.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·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(변경사항 포함)

- 10톤이상 : 해양수산부장관
- 10톤미만 - 5톤이상 : 시도지사
- 5톤미만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 불법어업의 유형

### 2. 어구

- 어구사용량 준수(안강망, 통발, 자망, 각망 등)
- 어구크기 제한 준수(형망, 조망 등)
- 어구사용방법 제한 준수(선망, 자망 등 끌어업 금지 등)
- 어구사용 금지 시기 및 구역 준수
- 2중이상 자망사용 금지

## 불법어업의 유형

### 3. 어선

- 허가받은 톤수(선복량 제한) 및 마력 준수
- 어선의 임의개조 금지(장·폭·심)
- 어선표지판, 선명·선적항 표기 준수
- 조업방해금지, 도움주는 행위 금지
- 입출항신고, 위치보고, 선단조업 이행

## 불법어업의 유형

### 4. 자원

-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·구역·체장 준수
- 암컷 포획금지
- 불법포획물 방류 및 판매금지(소지, 유통, 가공, 보관)
- 어획실적보고
- TAC 대상어종 할당량 준수 및 지정된 장소에서 위판